

시설 게시용

노인학대 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및 노인학대 유형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
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
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
습니다.

◆ 학대 유형 : 신체적, 언어적, 성적, 재정적, 방임, 유기

◆ 예 방 : 노인 스스로 자립, 부양스트레스 줄이기, 상담을 통한 사전 파악,
교육 및 홍보

◆ 학대 대응 : 노인 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고 응급센터,
경찰에 알린다.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 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 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노인학대 예방

◆ 노인학대예방 10대 수칙 ◆

- ①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 ②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 ④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 ⑤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 하십시오.
- ⑥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 ⑦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 ⑧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⑨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 ⑩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5.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법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하고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 차원의 대응방법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회 전반의 노인차별주의 의식도 희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정하고 경감시킬 수 있게 하고,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주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딸, 며느리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강화와 같은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법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법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위하여 여는 우선 복지, 의료 등의 노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교육과 사회이슈화의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

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학대의 결과로 신체 및 정신증상을 호소하는 노인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방임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양비 구상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학대 노인에 대한 서비스와 치료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개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패륜아 또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처벌위주의 대책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지만,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태도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 소양교육,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거나 정신병리를 가진 가해자에 대해서는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학대 관련자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사례에 따른 개별적 개입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분야의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지역별 노인학대판정 및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내의 노인학대 관련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학대를 은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과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역사회의 통반장이나 사회복지전문요원, 노인복지기관과 시설의 종사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의사, 간호사, 치료사 및 약사, 계량기 검침원이나 아파트 관리인, 경찰관 등을 노인학대 옴부즈맨(ombudsman)으로 위촉하여 이들이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가정봉사원이나 방문간호사들의 경우 수시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학대나 방임 심지어는 자기방임까지도 가장 빠르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노인학대의 파수꾼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